##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61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장철민·박홍배·이인영

한병도 • 정진욱 • 민병덕

복기왕 • 고민정 • 김종민

양문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 1호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9(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중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6조의2, 제26조의9,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로 한다.

제7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9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6조의9(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
	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
	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
	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
	<u>맹점, 관계 법인·단체의 장에</u>
	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
	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	2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 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 2. (생략)
- ③ (생 략)

	<u>제26조의2, 제26조의9,</u>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
	0조의2
	<u>.</u>
제	7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6조의9에 따른 위반행
	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